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9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마포구민에게 일상적인 체력증진 목적의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선수인력을 통한 전문체육 활동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변경

나. 조례의 입법목적 명확화(안 제1조)

다. ‘체육’ 활동의 범위 명확화 및 조문 정비(안 제2조)

라.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한 규정 정비(안 제12조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○ 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4조(선수 등의 육성)

2)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」 제15조(전문체육의 진흥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1. 8. 12. ~ 9. 1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6)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10.25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생활체육의 육성)”을 “(체육진흥 시책과 권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생활체육”을 “체육”으로, “강구”를 “마련”으로, “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”을 “체육활동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구청장은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1. 구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전개
  2.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
  3.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·지원
  4.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
  5. 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
  6.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·지원

7. 장애인·유아·청소년·노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

8. 학교·직장 체육 육성 및 지원

9.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

10.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동호인조직, 체육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생활체육의 육성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체육진흥 시책과 권장) 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<u>체육</u>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<u>마련</u>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 <u>체육활동</u>-----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-----.</p>
<p>제12조(경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</p>	<p>제12조(경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1. 구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                 2.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</p>

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.

1. 국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전개
2.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 교류
3.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·지원
4.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프로그램개발·보급
5.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
6.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육성·지원
7. 장애인·유아·청소년·노인

3.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·지원
  4.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
  5. 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
  6.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·지원
  7. 장애인·유아·청소년·노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
  8. 학교·직장 체육 육성 및 지원
  9.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
  10.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동호인조직, 체육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

8. 학교·직장 생활체육 육성  
및 지원

9.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  
하여 필요한 사업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경비의 지원 (안 제12조)

제12조(경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구민의 체육생활화운동 전개
2.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
3.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·지원
4.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
5. 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
6.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·지원
7. 장애인·유아·청소년·노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
8. 학교·직장 체육 육성 및 지원
9.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
10.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동호인조직, 체육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

### 4. 작성자 : 관광일자리국 생활체육과 안소현 (☎3153-9862)